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 설명서

무배당 KB 손보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ㅇ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은 보험사의 실적배당형보험,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구 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보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자보호 미적용
원금손실	원리금 보장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	계약자 부담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유형 중도해지 관련 유의사항

A고객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이전 시점에 사전 안내 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됨에 이의를 제기

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 의! 예금자보호 대상 확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DB제도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외부기관	
상담			콜센터	02-3702-8500	
• 민원	전화상담 (1544-9520)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 2
			콜센터	국번없이 1332	見級風
분쟁조정	누리집 (www.kbinsure.co.kr)	금융감독원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 교육인의센터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국번없이 1372	

◉ 상품 설명

1 원리금보장형보험 상품 내용

[금리연동형]

구분	내용
상품유형	•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KB 손해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사용자, DC:근로자, IRP:가입자)
상품특징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이 월단위로 변동되는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상품입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작용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매월 1 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 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지표금리는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 개월 이율을 가중이동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2015 년 11 월 12 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5 년 11 월 13 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KB 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binsure.co.kr > 공시실 > 보험상품공시 > 퇴직연금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형]

구분	내용			
 상품유형	•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KB 손해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사용자, DC:근로자, IRP:가입자)			
상품특징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이율보증기간(만기): 1년, 2년, 3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 회사는 매월 1 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KB 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binsure.co.kr > 공시실 > 보험상품공시 > 퇴직연금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율보증
	이율보증기간	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에	1년	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관한 사항	10	6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	
	2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۷ کان	12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5%	
	3년	1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	
		1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	
특별 중도해지	•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단위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 ±7 영업일 이내에 전부 KB 손해보험 자산관리 계약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상기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 단,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재설정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구분	내용
상품유형	•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KB 손해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사용자, DC:근로자, IRP:가입자)
상품특징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의 만기일은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합니다. •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매년 다른 적용이율을 적용하는 상품 입니다. • 이율변동주기: 매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회사가 정한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설정된 단위보험의 설정일로부터 최초 1 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1 차년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설정일 이후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 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 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 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 년 동안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3 차년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합니다. ● 회사는 매월 1 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연단위이율변동형 3 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KB 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binsure.co.kr > 공시실 > 보험상품공시 > 퇴직연금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적용이율 X 80%

특별 중도해지	•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연단위 이율변동형 3 년 단위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일 이후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또는 설정일 이후 2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전부 회사의 연단위 이율변동형 3 년을 제외한 KB 손해보험 자산관리계약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상기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가입자는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을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의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2 기타 안내사항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구분	내용
예금자 보호여부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 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 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KB 손해보험 퇴직연금 콜센터(1544-952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